

서울 행정 법 원

제 3 부

[2021구합55500]

사 건 명 :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원 고 : 원고1

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

담당변호사 변호사1, 변호사2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3, 변호사4

변론 종결 : 2022. 3. 11.

판결 선고 : 2022. 4. 15.

주 문

1. 피고가 2020. 11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8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

청구취지

피고가 2020. 11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당사자의 지위

원고는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자녀이고,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이라 한다) 제9조에 의하여 ○○○○○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,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·결정 등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.

나. 고인의 사망

1) 고인은 피고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○○○호(이하 '이 사건 선박'이라 한다)에서 2019. 5. 21.경부터 선원으로 근무하였다.

2) 고인은 2019. 6. 1. 이 사건 선박에서 호흡곤란,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,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, 폐부종 등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, 같은 달 3일 직접사인 '급성신손상, 대사성산증'으로 사망하였다.

다.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 및 이 사건 처분

1) 원고는 고인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. 10. 8.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(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)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(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)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

2) 피고는 2020. 11. 26. 고인이 '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'에 해당하고 고인의 유족에는 원고 외에 배우자 ○○○이 있다는 이유로, 원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유족급여(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

에 상당하는 금액)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(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) 중 각 1/2에 해당하는 합계 78,991,360원[=70,528,000원(고인의 승선평균임금 월 4,231,680원의 5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급여) + 8,463,360원(고인의 위 승선평균임금의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례비)]만을 지급하는 결정(이하 '이 사건 처분' 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11, 19호증(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○○○은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, 고인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서 부양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, 고인과 사회·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해왔고 고인의 장제를 지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1순위 수급권자이다. 그럼에도 ○○○에게 원고와 같은 순위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중 각 1/2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련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인정사실

1) ○○○은 2001. 9. 25.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, 고인의 사망 이후인 2019. 6. 3. 발급된 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2020. 5. 20. 발급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(폐쇄)에 각 고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. 고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인의 가족은 ○○○과 원고뿐이었고, 고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.